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2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사용 허가 관련 제한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시설대관 및 이용의 명확화와 합리화를 기하고

○ 시설대관 사용료에 관한 내용 중 일반 유료입장의 사용료와 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므로써 영화상영에 따른 대관신청의 활성화를 도모하며

○ 보다 많은 관람객이 예술회관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허가 제한사항에 상업목적의 집회나 단순한 친목모임 등을 추가하고 (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)

○ 사용료 특례 및 감면규정에 일반 유료입장은 관람료 수입액의 10%와 조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, 영화상영을 위한 대관사용은 사용기간중 관람료 수입액의 20%로 규정하며 (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)

○ 단체에 관한 관람료 할인규정 중 단체의 범위를 종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(제16조제8항)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참고자료 : 붙임

· 타 시·군 문화예술회관관련조례중 관련규정

나. 입법예고

· 예고기간 : 2004. 1. 7 ~ 2004. 1. 26 (20일간)

·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군청 및 읍·면 게시판 게시, 군 홈페이지 게재

·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**제3호는 제5호**로 하고, **제4호는 제6호**로 하며, **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.

3.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
4.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(계모임 등)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(반주기 반입 등)가 포함된 때

동조동항 제5호중 **"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"**를 **"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"**로 하고 **"사용정지를 2회"**를 **"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"**로 한다.

제11조제1항중 **"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"**를 **"그 금액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다"**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

제16조제8항중 **"30인 이상으로"**를 **"20인 이상으로"**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〈신설〉 〈신설〉 **3.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**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**사용정지를 2회**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**4.**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	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**3.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** **4.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(계모임 등)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(반주기 반입 등)가 포함된 때** **5.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- - - - - - -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** --- - - - - - - - - **6.**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제11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. 다만, **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** **②제1항의 사용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다.** ③ ~ ④ (생 략)	제11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. 다만, **그 금액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다.** **②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**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관람료 등) ①~⑦(생략)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이용에 대해 30% 범위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. 단, 단체는 **30인 이상으로** 한다.	제16조(관람료 등) ①~⑦(현행과 같음)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이용에 대해 30% 범위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. 단, 단체는 **20인 이상으로** 한다.